

성폭력은 무엇인가

들어가기

‘성폭력’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강간’이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은 가해자에 대해 ‘죽일 놈’, ‘그런 놈들은 크게 혼내줘야 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사건으로 들어 가면 어떨까?

**양이 남긴 짝막한 유서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심정이 베어있습니다. **양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자살하기 1시간 전인 새벽 1시반, 김해시 구산동에서 택시를 탔다가 운전자 공모씨에게 장위면 부곡리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공모씨는 이양에게 다시 만나자면서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줬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공모씨 :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아가씨가 드라이브하자 해 갔다.

최영태 기자 : 강간혐의로 긴급 체포된 공모씨는 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양을 부검해 정액과 DNA검사 등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택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김해에서 MBC뉴스 최영태입니다.

1997.9.11 MBC <뉴스데스크>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택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 MBC 사건 (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사회가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다. MBC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폭력에 의해 자신의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순결 혹은 정조를 빼앗겨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의 육체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택함으로써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세태에 경종을 울려주어야 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대학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조금만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보자.

흔히들 강간보다는 수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강제추행이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의 예를 들어보자. 대학에서도 MT 장소나 하숙집 등지에서 강제추행이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많이 공론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이 공론화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여자가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혹은 ‘남자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조금 과도하게 했나보지’ 등이다. 이처럼 사건이 공론화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2중·3중의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몇 년 전 우리학교에서 술을 마시고 자취집에서 다 같이 자는 도중 신입생 남학우가 자고 있던 1년 선배 여학우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과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처음에는 피해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사건이 공론화되다가 공청회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세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신분을 밝히면서 사건을 처리해나갔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년의 남학우들은 ‘1학년 새내기 인생 망칠 일 있느냐’, ‘대충 좋은 쪽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피해자와 비대위의 요구는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한다. 자신에게 가해질 유형·무형의 비난과 수근거림,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다닐 ‘성폭력 당한 여자’라는 꼬리표를 감수하고 성폭력의 경험을 자신의 신분과 함께 공론화한 결과는 바로 ‘남의 인생 망칠 일 있나라’는 동기들의 반응이었던 것이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성폭력이라고 바라보고 있는가? 흔히 너무나 당연히도 성폭력이라고 동의하는 강간의 경우에도 순결 혹은 정조의 상실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피해자의 인권이야 어떻든 좋게 좋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성폭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성폭력인가?

성폭력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최근 몇 년 간 여성운동 단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정립된 위와 같은 성폭력의 정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동의'와 '성적 자율권'이라는 말이다.

성폭력 판단 기준으로서 '동의'의 문제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제도적 인식은 성폭력 여부의 판단 기준을 피해자의 저항여부로 보고 있다. 강간죄에 대한 판례에는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한 손으로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세차게 흔드는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볼펜을 그 구멍에 넣으려 해도 볼펜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구성되지 못한다는 증거로 이러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예를 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상황을 한 번 가정해보자.

요즘 왕따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어느 고등학교의 한 반에도 역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있다. 그 반에서 힘도 세고 싸움도 잘 하는 몇몇은 지속적으로 왕따 학생을 불러다가 돈을 뜯어낸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가지 못하면 그 왕따 학생은 맞는다. 하지만 그 학생은 돈을 뜯어내는 학생들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간다.

이 상황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비록 왕따 학생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폭력의 문제가 이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의 여부를 저항의 유무로 판별하는 것은 위의 예를 통해 보았듯이 다양한 기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작동하는 권력을 깰 수 없지 않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또한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저항이어야 하는데 성폭력의 경우에 있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확실한 저항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힘들다. 일반인이 확인할 가능한 명백한 상처를 가해자의 몸에 입히지 않는 한 어떻게 저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피해자가 죽음의 위협조차 감수해야 하는 저항일 뿐이다.

다른 폭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특히 성폭력의 경우에 성폭력이나 아니냐의 판단기준은 분명히 피해자의 동의 여부이다. 하지만 동의를 했다고 해도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다시 앞의 가정으로 돌아가보자. 돈을 뜯어내는 학생들이 왕따 학생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너 우리가 이러는데 불만있어? 있으면 말해봐.” 하지만 왕따 학생은 불만을 말하지 못한다. 작은 소리로 “아니”라고 할 뿐이다. 외견상 왕따 학생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동의한다.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뿐만 아니라 선배와 후배, 교수와 학생, 혹은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권력 등 중층으로 얽힌 권력관계 사이의 암묵적 압력으로 인한 동의를 과연 ‘자발적 동의’로 볼 수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목도하는 현상이다. 예전에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에서 화장실 백지자보에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례를 적어달라고 했을 때 수집된 사례 중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우연히 선배 오빠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선배 오빠가 계속 옆에 있는 내 몸을 만지고 내 얼굴을 만졌다. 그 당시에 나는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쉽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

이 상황에서 후배인 여학우가 보인 행동은 외견상 선배 오빠의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싫으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성폭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그 여학우가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은 가해자가 선배라는 점,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는 앞으로도 계속 마주칠 선배인데 싫다고 했다가 괜히 관계가 서먹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굳이 여성의 no는 언제나 yes로 간주되며, 여성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지 않더라도 성폭력 판단 기준으로서 ‘동의’ 여부는 남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조건,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권력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사고되어야 한다. 동의는 종속적 지위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 여부에 있어서 피해자 주관의 문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이라는 말은 이제 학계에서, 여성운동 계에서 정설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대학 내에서도 서서히 공유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일차적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이라는 말은 동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이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외견상 ‘동의’라는 형태를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동의부터 암묵적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동의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동의를 했더라도 그것이 어떤 성격의 동의였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해 가장 흔히 제기되는 질문은 피해자의 주관이라는 판단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주관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객관’이 무엇이고 ‘주관’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객관’의 대명사인 법률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분 짓는 기준은 여성의 질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었는가의 여부이다. 그러나 얼핏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 기준에 의하면 여성의 질에 남성의 성기가 아닌 이물질이 삽입되었을 경우에는 강간보다 수위가 약한 강제추행으로 규정되며, 근래 신고가 늘고 있는 남성간의 성폭력은 어떤 형태의 성폭력이라 할지라도 결코 강간으로 규정되지 못한다.

성적 자율권의 침해

성적 자율권이라는 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적 자율권의 침해는 성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성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것은 강간과 같은 물리적 성폭력에서부터 불쾌한 성적 농담과 같은 언어적 유형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는 보통 성폭력의 심각도를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것부터 성희롱과 같은 경미한 것까지 구분 짓는 경향이 있다. 물론 성폭력 사이에 아무런 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경험과 언어적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경험 사이에는 당연히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의 심각도를 구분 짓는 것에 경계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접근이 가장 극단적인 성폭력에만 논의의 초점을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강간에 초점이 맞춰진 성폭력 문제への 접근은 강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일상적인 성폭력들을 성폭력 담론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극단적인 형태가 아닌 나머지 형태의 성폭력에는 침묵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결국 성폭력을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문제 있는 몇몇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시키게 된다.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일상적으로 당하는 성폭력, 수업시간 교수의 성폭력적 발언, 선배나 동기에 의한 성폭력적 발언 등 흔히 말하는 경미한 성폭력들은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성폭력과 전혀 다른 맥락 위에 서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전혀 경미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다.

나가며

성폭력에 대해서 사고할 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히 ‘재수 없는 피해자와 정신나간 가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지. 그러한 성폭력 사건을 허용하도록 만드는 집단 자체의 문화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결마다 숨어있는 권력의 문제에 민감해지지 못한다면,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놓치고 있는 것에 다른 아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과 위계로 인한 불평등한 권력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집단과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8가지 잘못된 생각들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의 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때문에 고통이나 후유증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못된생각] 1: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우리는 흔히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상대방(여성)의 의사에 반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이를테면 직장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은 농담,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요된 매춘, 포르노(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등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 문화의 한부분으로 스며들어 있고 모든 여성들은 '단지 여자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성폭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못된생각] 2: 강간은 폭력이 아닌 조금 난폭한 성관계다.

바로 이러한 통념 때문에 피해여성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시키며 깊은 자책감이나 수치감, 절망감 등에 빠지게 됩니다. 강간은 성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남성의 성이 공격무기가 되어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행위일 따름입니다. 물론 남성 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여성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행위입니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성폭력을 강도에게 상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피해여성의 심리적 극복은 훨씬 쉬워집니다.

[잘못된생각] 3: 나에게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성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2%의 성폭력만 알려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특정연령, 계층 혹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종교,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생각] 4: 남성의 참을수 없는 성충동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며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전제된 것입니다. 20세기 성과학자들에 의해 이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 사례에서도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가해자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을 하게 되는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쉽게 이러한 수단이 되는 것은 남성의 성은 억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성비하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생각] 5: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이다.

여름철만 되면 각종 매스컴에서는 여성의 노출

과 성폭력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잘못된 생각이면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성폭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그리고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30%가 넘으며 여름철에만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언동에 성폭력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풍조가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비난의 화살을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잘못된 생각」 6: 강간은 낮은 사람에 의해 발생합니다.

실제로 강간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역시 성폭력을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로 보는 인식이 전제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7: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범은 저소득층의 성격 파탄자나 정신이상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 상담소의 사례를 통해 보아도 가해자가 정신이상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나 계층적 특수성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실한 직업인으로 혹은 착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대해 무력하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택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생각」 8: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흔히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꿰 수 있느냐?'며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간으로 물고 가거나 피해여성을 정조관념이 없는 여성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간범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합니다. 따라서 피해상황은 흔들리는 바늘이 아닌 꽂 잡혀 있는 바늘과도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하기보다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심리적인 위협만으로도 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착하고 온순한 아내만들기 여성교육이 여성들에게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든 것도 큰 요인입니다.

성폭력, 이런 게 궁금해요.

Q 성폭력 사실이 없었는데 여성이 사건을 날조 조작하여 어떤 사람을 가해자로 만든다면 어떻게 합니까?

A 성폭력 범죄는 다른 여타의 범죄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밀히 일어난다는 것과 증인이 거의 없다는 것, 기간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유일한 증인은 피해자이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미국에서는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조작하여 주장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신교수 사건에서 우조교에게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던 2심 판사는 이 예를 인용하면서 '신교수에게 배상판결을 내릴 경우 일부 여성들이 돈을 노리고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신교수에게 배상판결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너무나 무시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죄인이 되고 정숙하지 못한 여자, 어디서 굴러먹은 여자 취급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감히 누가 당하지도 않은 성폭력을 조작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땅에서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아야 하는 일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조교가 대학 내에서 비밀비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성폭력을 알림으로 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는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신교수는 아직도 명강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당하지도 않은 성폭력을 조작해 누군가를 음해하려고 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제2, 제3의 성폭력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또한 성폭력 사건의 논의 테이블은 피해자의 말만 듣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과 양쪽의 진술을 듣고 상황을 정리한 후 양쪽의 합의를 보아 결론을 내립니다.

Q 그렇게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다 성폭력이라고 꼬투리를 잡는다면 어떻게 삼니까? 길가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하거나 밀려서 넘어지다가 우연히 가슴을 만져도 다 성폭행입니까?

A 복잡한 버스나 전철 안에서 몸이 접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여자의 몸에 밀착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데이트 신청을 해서 거절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싫다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며 추근거리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술자리에서 마주앉은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은 당연한 예의지만 "여자가 따르는 술맛이 더 달다."는 식으로 여자 동료를 술시중꾼 취급하는 행위는 당연히 성폭력입니다. 넘어지면서 우연히 가슴을 짚었다면 상대방 여성에게 사과하고 기분 좋게 헤어지면 되겠죠.

Q 가해자도 결국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또 하나의 피해자 아닙니까?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물릴 수는 없지 않나요?

A 물론 아주 넓게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전두환도 낙후된 정치구조의 피해자이고, 김영삼도 후진적인 경제 시스템의 피해자고 일본도 제국주의 만연의 피해자가 됩니다. 현실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원칙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죠.

Q 내규에 나와 있는 성폭력 행위들은 굉장히 애매하고 사소한 것들까지 건드리고 있는 데요. 그러면 여학우를 바라보는 것이나 술을 여러 번 권하는 것 같은 것도 성폭력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A 내규에 나와 있는 예들이 모든 경우에 성폭력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만 이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그 일이 일어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성폭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학우를 바라보는 것은 성폭력이 아니지만 여학우의 몸을 아래위로 반복적으로 훑어보는 것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적 맥락입니다. 물론 각자가 자신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이 혹시 성폭력이 되지 않는지 생각해보고 서로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겠지요.

Q 성적 농담이나 촌극 등에서의 성행위 흉내, 첫날밤에 게임 등이 성폭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성적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A 모든 성적인 표현이나 이야기를 금하는 도덕적 엄숙주의의 발상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상황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성적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성적인 이야기나 표현들이 어떠한 것이었나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성적인 이야기로 한 성만 즐거워지고 한 성은 배제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Q 새터는 새내기들과 선배들이 뭉쳐 끈끈한 관계를 만들고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혹시 새터 내규로 인해 분위기가 서먹해지지는 않을까요?

A 모두가 즐거워야할 새터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면 그 이상 서먹한 분위기가 또 있을까요. '공동체의 일치' 때문에 성폭력이 숨겨져야 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성폭력은 특별히 민감한 소수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의 끈끈한 관계유지를 위해 소수를 희생해서는 안되겠지요. 꼭 음란가요를 부르고 성에 대한 농담을 해야만 분위기가 즐거워지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분위기가 서먹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새터 내규에서는 가해자의 공개실명사과를 원칙으로 하는 있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는 않을까요?

A 성폭력이 공동체 내의 왜곡된 성문화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가해자도 결국 잘못된 사회구조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사과자보는 가해자에 대한 단순한 단죄가 아니라 성폭력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사과하고 성폭력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최소한의 표시겠지요. 성폭력은 특별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명사과자보를 보고 '이런 성폭력범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겠지요.

스미스씨 이야기

A: 스미스씨, 길을 가는데 강도가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다고 주장하셨죠?

스미스: 네

A: 칼을 직접 보았습니까?

스미스: 아니오

A: 강도와 싸우고 저항하셨습니까?

스미스: 아니오

A: 왜 안했죠?

스미스: 그 사람은 칼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A: 그래서 저항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요구대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거군요.

스미스: 네.

A: 소리를 질렀습니까?

스미스: 아니오.

A: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은 도움을 얻기 위해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스미스: 저는 두려웠습니다.

A: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스미스: 아니오.

A: 이전에 그냥 돈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스미스: 네, 물론이요.

A: 음... 그건 당신이 기꺼이 준건가요? 그건 그렇고 강도를 만나기 전 그날 당신은 어디서 저녁을 보냈죠?

스미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A: 술을 마신 상태라구요? 그래 술값을 어떻게 지불했죠?

스미스: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A: 지갑 안에 돈이 얼마나 있었죠?

스미스: 50만원 정도

A: 꽤 많은 돈이군요. 술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갑에 있던 그 돈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스미스: 글썄요. 아마 한 두 시간 동안 지갑을 밖에 내놓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A: 당신은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그냥 준 적이 있었죠. 사실 그 자선행위로 인해 당신은 명망을 얻었겠죠. 당신은 당신이 술값을 지불했다고 했죠. 당신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짜고 애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스미스: 들어보세요. 내가 원했다면...

A: 그건 그렇고 노상 강도에게 잡혀있던 게 몇 시죠?

스미스: 밤 11시쯤이요.

A: 밤 11시에 길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스미스: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A: 그냥 걷고 있었다구요? 너무 취해서 운전할 수 없었군요. 밤늦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을 테지요.

당신은 노상 강도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스미스: 노상강도를 당한다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A: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스미스: 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A: 값비싼 옷 말이죠?

스미스: 그래요.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난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A: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은 밤늦게 길거리를 걸어가는 중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거죠. 게다가 가는 돈이 많으니 내 돈을 빼앗아가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도록 비싼 옷을 입었구요. 그렇지 않나요?

A: 우리가 다른 사항들에 대해 더 잘 알지 못한다면 당신이 노상강도 당한 이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유발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스미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